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6 선고 2023가단5176957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고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담당변호사 김용현

피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와 담당변호사 김준동, 이준석

변론 종결 2024. 3. 12.

판결 선고 2024. 4.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그 중,
가.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9. 28.부터 2023. 6. 2.까지는 연 2.3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9. 8.부터 2022. 10. 25.까지는 연 1.84%의, 그 다음 날부터
2022. 11. 7.까지는 연 4.44.%의, 그 다음 날부터 2023. 6. 2.까지는 연 5.67%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특별시 소재 서울특별시의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해당되는 중소기업과 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하여 서울경제활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재단이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신용보증서를 발급한 서울특별시 내 소상공인 등에게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이다.

나. 피고는 2020. 4. 28. A에게 A이 원고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 2,5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기한을 2021. 4. 28., 보증비율 100%로 한 신용보증서를 발급(이하 '제1보증서'라 한다)해 주었고, 원고는 같은 날 A에게 여신금액 2,500만 원, 여신만료일 2021. 4. 28., 이자율 변동금리(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채무 이행 완료일까지 원고가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이하 같다), 지연배상금율 여신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연 3%를 더한 금액(최고 지연배상금율은 연 11%), 원금을 여신만료일에 전액 상환, 이자를 여신실행일 이후 매월 납입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대출계약(이하 '1차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대출금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는 2021. 4. 1. 제1보증서의 보증기한을 2022. 4. 28.까지 1차 연장하여 주었고, 2022. 4. 7. 제1보증서의 보증기한을 2023. 4. 28.까지 2차 연장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22. 2. 8. A에게 A이 원고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기한을 2027. 2. 5., 보증비율 100%로 한 신용보증서를 발급(이하 '제2보증서'라 하고, 제1보증서와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보증서'라 한다)해 주었고, 원고는 같은 날 A에게 여신금액 1,000만 원, 여신만료일 2027. 2. 5., 이자율 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 여신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연 3%를 더한 금액(최고 지연배상금율은 연 11%), 원금은 여신실행일로부터 1년 이후인 2023. 3. 8.부터 매월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고, 이자는 매월 8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대출계약(이하 '2차

대출계약'이라 하고, 1차 대출계약과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대출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A은 1차 대출계약 이자를 2022. 9. 27.까지만 납입한 후 이자 납입을 연체하였고, 2차 대출계약 이자를 2022. 9. 7.까지만 납입한 후 이자 납입을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2. 11. 23.경 피고에게 신용보증사고가 2022. 10. 26. 발생하였음을 통지하면서 이 사건 각 보증서에 따른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였다.

마. 한편 A의 채권자 B는 2020. 6. 4. 서울서부지방법원(2020카단51444)으로부터 청구금액 600만 원, A의 원고에 대한 예금채권 200만 원을 포함한 3개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무자를 A, 원고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그 결정문이 2020. 6. 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보증부채권의 기한이익상실사유에 해당하여 대출실행이 금지됨에도, 원고가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실행을 하였으므로, 이는 신용보증약관 제22조 제1항 제8호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3. 1. 25.경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 청구내역 전액 면책 통지를 하면서 보증채무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증서에 따른 신용보증자로서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에 따른 보증금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차 대출계약 원금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이자 지급일 다음 날인 2022. 9.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3. 6. 2.까지는 약정 이율 연 2.3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차 대출계약 원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이자 지급일 다음 날인 2022. 9. 8.부터 2022. 10. 25.까지는 약정 이율 연 1.84%의, 그 다음 날부터 2022. 11. 7.까지는 약정 이율 연 4.44%의, 그 다음 날부터 위 2023. 6. 2.까지는 약정 이율 연 5.67%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 인한 취소 및 면책 항변

가. 주장

1)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적용되는 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여신거래기본약관'이라 한다)에 의하면,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채권에 대한 가압류 통지가 발송된 때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보증서에 적용되는 신용보증약관(이하 '신용보증약관'이라 한다)에서 보증부대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채권자인 원고에게 보증책임자인 피고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았음에도 고의로 피고에게 보증사고 발생을 통지하지 않아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를 하였고, 피고는 그로 인하여 채무자인 A의 변제능력에 대한 착오에 빠져 제1보증서에 대한 두 차례의 각 보증기한연장계약 및 제2보증서의 발급에 따른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민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각 계약을 취소한다.

2) 설령 이 사건 각 보증서에 기한 보증계약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신용보증약관에 의하면, 기한이익상실과 같은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채권자에게 보증부대출 실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피고가 보증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은 기한이익상실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 사건 각 대출을 실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신용보증약관에 따라 이 사건 각 보증서에 기한 보증액이 전액 면책되었다.

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과 관련한 신용보증약관 및 여신거래기본약관 규정은 아래와 같다.

<신용보증약관>

제10조(신용보증사고 및 통지기한)

① 신용보증사고라 함은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하나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채권자('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아래의 통지기한 내에 재단('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게 도달되도록 반드시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4	채권자가 보증부대출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킨 때	기한이익 상실일	사고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	----------------------------	----------	-------------------

제11조(보증부대출의 실행금지)

① 채권자는 신용보증통지일 이후라도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따로 재단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보증부대출(분할대출 포함)을 실행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제10조 제1항에 열거된 신용보증사고 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제22조(면책)

① 재단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제11조(보증부대출의 실행금지)를 위반하여 보증부대출을 실행한 때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① 고객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고객은 당연히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지급보증거래에 있어서의 사전구상채무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제 예치금 기타 은행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담보재산이 존재하는 채무의 경우에는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가압류를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

2) 원고의 신용보증사고 통지의무 위반 여부

피고의 통지의무위반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신용보증약관 제10조 제1항 순번 4의 신용보증사고는 채권자인 원고가 적극적으로 채무자에게 기한이익 상실조치를 취한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이후 2차 대출계약을 실행할 때까지 채무자인 A에게 이 사건 가압류결정 송달을 이유로 한 기한이익 상실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당초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 통지의무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용보증약관 제10조 제1항 순번 4의 신용보증사고사유를 '채권자가 보증부대출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킨 때'로 정의하는 문언상 이를 채권자가 보증부대출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조치가 있어야 신용보증사고사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①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가압류결정이 발송된 때를 기한의 이익이 당연 상실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신용보증약관 제10조 제1항 순번 4에서 '기한이익 상실일'을 신용보증사고 사유 발생일로 정하면서 그로부터 10일 이내를 통지기한으로 정하여 통지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 ③ 비록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5항에서, '고객이 은행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은행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분할상환원금·분할상환원리금·이자·지연배상금의 수령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은행이 지정하는 기한의 이익은 그 때부터 부활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기한이익 당연 상실 사유가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의 거래 상황 등을 기초로 한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원고의 판단에 따라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실제 기한이익 상실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위와 같은 신용사고의 통지의무가 보증채무자의 사전구상권 보전 등을 통하여 보증채무자가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인 점을 고려하면, 보증채무자인 피고와의 관계에서까지 채권자인 원고의 기한이익 상실 조치 여부에 따라 위와 같은 통지의무 발생 여부가 좌우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용보증약관 제10조 제1항 순번 4의 신용보증사고사유로 규정된 '채권자가 보증부대출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킨 때'의 의미는,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객관적으로 발생한 때'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1항 제1호의 기한이익 상실 사유인 '1차 대출계약의 대출채무자인 A의 원고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2020. 6. 9. 가압류결정의 통지를 송달받은 이상 그 송달일에 1차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채무는 기한이익이 상실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2020. 6. 9.부터 10일 내에 피고에게 신용보증약관 제10조 제1항에 따른 신용보증사고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위 기간 내 피고에게 신용보증사고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신용보증사고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원고의 기망행위 여부

원고가 위와 같이 신용보증사고 통지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것과 같이 여신거래약기본약관 제7조 제5항에서, '여신거래약정 제7조 제1항의 기한의 이익 당면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분할상환원금·분할상환원리금·이자·지연배상금의 수령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은행이 지정하는 기한의 이익은 그 때부터 부활된다'는 규정을 두어 채무자와의 거래 상황 등에 비추어 채무자의 변제 능력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권자인 원고가 해당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가압류결정 대상 채권인 A의 원고에 대한 예금채권액수가 200만 원의 비교적 소액이었고, 채무자인 A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원고에게 통지된 2020. 6. 9. 이후 제1보증서가 2021. 4. 7. 및 2022. 4. 7. 두 차례에 걸쳐 보증기한이 연장되고, 그 사이인 2022. 2. 8. 2차 대출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1차 대출계약에 따른 이자를 약정일에 정상적으로 계속 지급하여 왔고, 2022.9.8. 및 2022. 9. 28.이 되어서야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의 이자 지급을 최초 연체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A의 변제 능력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 이자 연체 전까지 A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 조치를 별도로 하지 않았고, 피고에 대한 신용보증사고 통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기한이익 상실 사유 발생을 원인으로 한 신용사고발생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채무자인 A의 변제 능력과 관련하여 보증채무자인 피고를 기망하는 행위가 있었다거나, 원고에게 그와 같은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면책 주장에 관한 판단

신용보증약관 제11조 제1항 제1호의 보증부대출실행금지 규정은, 피고의 신용보증통지가 원고에게 있는 이후 채무자에 대한 대출이 아직 실행되기 전이라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고가 대출실행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1차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송달일 이전에 실행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원고에게 송달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제1보증서의 보증기한 연장으로 인한 1차 대출계약의 대출 기한 연장은 이미 실행된 1차 대출계약에서 정한 대출 조건의 변경에 해당할 뿐 이를 대출 자체가

실행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1차 대출계약을 실행함에 있어 신용보증약관 제11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원고에게 송달될 당시 2차 대출계약 자체가 체결되지 않았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런데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송달된 사실만으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2차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채권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2차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 실행행위가 위 약관 제11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윤양지